

#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8
----------	-----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위임 입법의 확대로 자치법규 제·개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위 법령의 잦은 제·개정으로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누적되고 있음.
- 따라서, 법령 위임범위의 일탈,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법령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균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법령 위임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반사항 미정비 조례
- 개정 사항(2개 유형으로 분류)
  - 법령 위반사항 미 정비 : 5개 조례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 관람자가 관광지 내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 변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제21조를 선량한 주의 의무 요구로 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폐교를 창작스튜디오시설로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최초 위탁일부터 5년까지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위반)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한 조례 제4조제3항의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위반)

⇒ 사용료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12조제2항의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위반)

⇒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 변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제16조제2항을 선량한 주의 의무 요구로 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2003. 05. 29일 전면 개정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1조를 현행 법령인 주택법 조항을 인용하도록 개정

⇒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용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균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례 제16조를 삭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 2015. 05. 18일 전부개정 이전의 지역보건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별표를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과 용어를 인용하도록 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

#### - 법령 위임사항 미 반영 : 4개 조례

##### · 평창군 건축 조례의 개정

⇒ 주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기준을 0.5m ~ 3m 이내로 대상 건축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조례 별표 3의 비고를 개정하여 부속용도에 해당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일괄적으로 0.5m 이상으로 완화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의 위임사항)

#####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를 신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위임사항)

⇒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 운동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13조제1항제6호를 신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위임사항)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제50조제2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3항의 위임사항)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 이하인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52조제3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의 위임사항)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위임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2) 규제심사, 부패연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저촉사항 없음.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의 의무) 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 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창군 건축 조례」의 개정)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호”를 “6호”로 하고, “6호”를 “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설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평창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9조(「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  
검진 등을 한 자

제2조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태료”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건축 조례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 : 1.5미터</li> <li>•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li> </ul>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 : 1.5미터</li> <li>•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li> </ul>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미터</li> </ul>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미터</li> </ul>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 3미터</li> <li>• 연립주택 : 2미터</li> <li>• 다세대주택 : 1미터</li> </ul>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 0.5미터, 외벽선 : 1미터)</li> </ul>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업지역 : 1미터</li> <li>•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li> </ul>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 3미터</li> <li>• 연립주택 : 2미터</li> <li>• 다세대주택 : 1미터</li> </ul>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li> </ul>
아. 그 밖에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미터</li> </ul>

---

비고

-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 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 다. 4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 3. 미첨부 사유

- 법령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위임 사항 중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 동 기
연락처	(033) 330 - 2206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생략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88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영 등)**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대지의 공지 기준)**

-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 ① ~ ② 생략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⑥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